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2029호
2025년 1월 8일
수요일

공 고

○ 공 고 제 6 2 호 시정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치 수 과 2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5-62호

시정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구역을 불법 점용하여 경작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 8.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하천법」 위반(불법경작)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2. 공고기간 : 2025. 1. 8. ~ 2024. 1. 23.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5. 공시송달 내역

위 치	행 위 자		위반사항
	성 명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491-7번지(천) 일원	미상		하천구역 불법점용(경작)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5-7번지(천) 일원	미상		하천구역 불법점용(경작)

6. 원상회복 이행 기한 : 2025. 1. 23.까지
7. 유의사항

가. 기간 내 원상회복(자진철거)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하천법」 제95조(벌칙)에 의거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 후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같은 법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 남동구청 치수과 하천팀(☎032-453-846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운연동 491-7번지 일원 및 195-7번지 일원]



☐ **현장사진**



<운연동 195-7번지 일원(미시정)>



<운연동 491-7번지 일원(미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하천법」 위반(불법경작)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